



전라남도청 하절기 대비 위생점검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 신 관내 전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(집단급식소 포함) 대표자 귀하

(경유)

제 목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시간 위생 모니터링 시스템 및 오염도 측정기 설치 안내

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하절기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중독 및 수인성 감염병 발생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,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본 도청에서는
도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특히 올해부터는 '식품위생법'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육안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, 디지털 기반의 과학적 위생
관리 시스템 도입이 권고 및 의무화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필수 비치 품목 및 준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
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법적 근거

「식품위생법」 제3조(식품 등의 취급 기준)

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(영업자 준수사항) 및 동법 시행규칙 [별표 17]

「정부합동 하절기 식품안전관리 특별지침」(2026-03)

■ 주요 내용

가. 적용 대상: 관내 일반음식점, 카페, 제과점 및 단체 급식소 전체

나. 필수 비치 및 설치 기준 (지정 품목)

ATP 오염도 측정기: 조리 기구 및 종사자 손의 미생물 오염도를 현장에서 즉시 수치화하여 기록 관리할 것.

실시간 온도도 로깅 시스템 (testo Saveris 2 등): 냉장/냉동고 내 온도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

기록이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어 수시 확인이 가능할 것.

다. 행정 사항

점검 시 해당 장비 미비치 및 기록 누락 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.

현장 점검 시 실시간 데이터 로그(Log) 기록 확인 예정.

* 지원 조건 및 준수 사항

비치 기한: 2026. 04. 09. (목)까지

지원 방식: 지정된 정부 공인 업체를 통해 선구매 후 증빙 서류 제출 시.

하절기 위생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전액(또는 90%) 환급 교부.

전라남도지사

수신자 :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

담당 부서: 식품위생과

식품 위생 팀 장: 김나영

식품 위생 과 장: 이정남

전 결 2026.03

전 화 번 호: 010-

F A X: 061-287-

우 (58564)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